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3
----------	-----

제출년월일 : 2019. 11.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과제 권고사항 등의 반영으로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지역경관을 통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관사업의 대상 기준 마련 (안 제10조)

- 도시경관의 기록화, 디자인 개선, 수변공간 등의 경관 개선을 위한 기준을 정함

나.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확대(안 제26조)

- 상위법령 개정 사항의 미반영 부분에 대한 경관심의 기준을 정함.
- (추가)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 철도시설, 도시철도, 하천시설 사업
- (추가)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 원 이상의 사업

다.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완화 및 확대(안 제27조)

- (추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제외
- (변경)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연면적 2,500제곱미터 →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변경)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기존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 포함)
- (추가)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라. 재·개정된 법령에 맞게 내용 수정 및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결과 : 제출된 의견 없음(예고기간 : 2019.9.20.~10.10.)
- 2) 규제심사 :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 권유(미반영)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경관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7조”를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의 제목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를 “(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안서에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3호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경관관리구역”을 “경관지구 등 경관관리구역”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제4호를 제2호로 하고, 제10조제1호를 제4호로 하며, 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10조제2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호(중전

의 제2호) 중 “**군내 주요공간**”을 “**도시의 주요 공간**”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호(중전의 제4호) 중 “**공공시설물 및 공공구조물**”을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사업
5.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시범사업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호의 사항을 말한다**”를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제1호부터 각 호 외의 부분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 제4호 및 각 호 외의 부분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3조의 제목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을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의 구성·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평창군”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군민단체”를 “시민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4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른”을 “따른 평창군”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여야 한다”를 “취할 수 있다”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을 “(경관협정에 관한 조정·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3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제2항 중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를 “영 제17조”로 한다.

제2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18조제1항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 철도시설 사업, 도시철도시설 사업(보상비 제외)

2.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보상비 제외)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제27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관지구 건축물,

제27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제27조제1호나목 중 “도시계획위원회”를 “평창군 군계획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5층 이상 건축물

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제27조제3호 중 “660제곱미터”를 각각 “1,00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3조제5항”을 “영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군수는”을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로, “군수 소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를 설치한다”를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한다.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부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 제목 “(경관위원회의 구성)”을 “(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제3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제1항 중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로, “**심의한**”을 “**심의·자문한**”으로, “**심의를**”을 “**심의·자문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심의·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를 “**「평창군 군계획 조례**」”로, “**군계획위원회의**”를 “**군계획위**

원회”로 한다.

이 경우 심의내용에 건축, 도시, 조경,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등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제36조의2를 삭제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를 제39조로 하고,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이외의 수당 및 회의 방법 등 절차에 관해서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관 심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경관 심의(자문) 신청서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사무실)	(☎)		
	설 계 자 (사무소명/대표자)	/		
사업구분	구 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변경		
	사업명/기간	/		
	대상시설/면적	/		
	사업위치			
신청내용				
「평창군 경관조례」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경관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평창군경관위원회위원장 귀하				
구비서류				
1. 경관형성 계획서				
2. 계획도면				
3. 조감도 및 사업추진 전·후 대비 시뮬레이션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정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및 평창군의 우수한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지역경관을 통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 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 전 · 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 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2. ~ 6. (생략)</p> <p>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평창 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경관 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 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 으로 하며, 천혜의 자연자원과 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경관을 형성하고 군민의 삶의</p>	<p>제1조(목적) ----- 「경관법」 ----- ----- ----- ----- ----- ----- ----- ----- -----.</p> <p>제2조(정의) ----- -----.</p> <p>1. ----- 「경관법」 (이 하 "법"이라 한다) 제7조----- ----- ----- ----- -----.</p> <p>2. ~ 6. (현행과 같음)</p> <p>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삭 제></p>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군민의 책무) ①·② (생략)
③ 군민은 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5. (생략)
- ② ~ ④ (생략)
- ⑤ 군수는 제2항에 의한 검토사항 및 경관계획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60일 이내 서면으로 통지하고, 경관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이에 대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 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7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

----- 다음 -----

-----.

- 1. ~ 5. (현행과 같음)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삭 제>

제8조(경관계획의 내용) -----

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2. (생략)
- 3. 경관지구, 미관지구,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 4. ~ 8. (생략)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 1. (생략)
- 2. 군내 주요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 3. 수변공간 및 주요 하천 변의 경관 개선사업
- 4. 공공시설물 및 공공구조물의 정비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
- 5. 경관계획의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한 건물 리모델링 및 옥외광고물 정비사업

- 6. (생략)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

--.

- 1. 2. (현행과 같음)
- 3. 경관지구 등 경관관리구역-----
- 4. ~ 8. (현행과 같음)

제10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 4. (현행 제1호와 같음)
- 6. 도시의 주요 공간 -----
- 3. 하천, 호수 등 수변공간의 경관개선 사업
- 2.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
- 5. 도시경관을 형성하기 위한 경관시범사업

- 7. (현행 제6호와 같음)

제11조(경관사업계획서) -----

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6. 그 밖에 경관사업 추진을 위해 평창군 경관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 방안의 적절성

<신설>

<신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 호와

같다

1. ~ 5. (현행과 같음)

<삭제>

제12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운영) ① ----- 따른 평창군 -----

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생략)
2. 군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생략)
4. 경관사업 시행자

<신설>

5. (생략)
6. 지방의회 의원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 ⑨ (생략)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2. (생략)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

--.

1. (현행과 같음)
2. 시민단체-----
4. (현행 제3호와 같음)

<삭제>

5.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현행 제5호와 같음)
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14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 따른 평창군 -----
-----.

1. 2. (현행과 같음)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

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군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경
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
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
원) ①·② (생략)

<신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
원) ①·② (생략)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
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
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취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지
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해당 경관협정의 사
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
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
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
원) ①·② (현행과 같음)

<삭제>

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 계획서) ① (생략)
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항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20억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 사업의 시설을 말한다.

<신 설>

제2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 계획서)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조-----

-----.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① 영 제18조제1항1호나목 및 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도로시설 사업, 철도시설 사업, 도시철도시설 사업(보상비 제외)

2. 총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하천시설 사업(보상비 제외)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군수가 시행 또는 승인하는 100억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및 미관지구의 건
축물, 다만, 다음 각목의 건축
물은 제외한다.

가. 연면적이 200㎡미만 또는
층수가 3층 미만인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
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평창읍 시가지, 대관령면
시가지 : 5층 이상 또는 연
면적 2,500 제곱미터 이상
의 건축물

나. 평창 봉평 레저·문화창
작 특구내 문화창작지구 :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30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 이상(단, 용지보상비 제외)의
사업을 말한다.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1. 경관지구 건축물, -----
----.

가. 「건축법」 제14조에 따
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

----- 평창군
군계획위원회 -----

2. -----

가. 5층 이상 건축물

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
상 건축물

3. -----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축물 포함)

4. (생략)

<신설>

제28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3항 및 시행령 제25조2항 규정에 따른 평창군 도시·건축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5. (생략)

②·③ (생략)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군수 소

----- 1,000제곱미터 -----

----- 1,000제곱미터 -----

4. (현행과 같음)

5.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 연습장

제28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삭제>

제29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

1. ~ 5.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30조(경관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
----- 평창군

속 하에 평창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생략)

<신설>

제32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2. (생략)
3. 군수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4. 군수의 인·허가 등을 받아
야 하는 사업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항
5.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외
형 디자인 및 단지 내 경관계
획에 관한 사항
6.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필
요한 경관을 고려한 각종계획
· 개발기준 수립 내용
7. 8. (생략)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3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 ②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①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7. 8.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 회의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소집 운영한다.

② (생략)

③ 위원은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1. 군의회 의원

2. 3. (생략)

④ (생략)

<신 설>

②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경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3.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및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

제34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생략)

<신설>

제35조(경관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4조(소위원회) 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 심의·자문한 -- -- 심의·자문을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자문 안건에 따라 서면 또는 인터넷을 활용한 심의·자문을 진행할 수 있다.

제35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삭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가족이 직접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해당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⑤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설명 또는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경관위원회의 심의·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군

수가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조사·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⑧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제36조(심의 의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1. 「평창군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평창군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

2. ~ 5. (생략)

② (생략)

제36조의2(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

제36조(심의 의제 등) ① -----

----- . 이 경우 심의내용에 건축, 도시, 조경, 공공디자인, 야간경관 등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에 한정한다.

1. 「평창군 군계획 조례」-----

----- 군계획위원회 --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6조의2(수당 등) <삭제>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경관을 위한 경고) ① 군

수는 국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도 경관계획을 고려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 인·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경관형성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관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입목벌채, 토지형질변경 등의 인·허가 또는 출입·취사·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이미 완료된 사업장(건축물·시설물, 사업부지 등

제37조(경관을 위한 경고) 삭제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경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건물 등 소유자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경관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30일 이내에 경관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4항에 따라 경관개선을 권고 받은 사업자가 경관개선 권고에 불응하여 경관개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사업 대상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38조 (생략)

제3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는 바 이외의 수당 및 회의 방법 등 절차에 관해서는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 (현행 제38조와 같음)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①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7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경관사업의 계획 수립, 경관사업의 추진 및 사후관리 등 경관사업의 각 단계에 참여하여 경관사업이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경관협정에 관한 지원)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협정서 작성 등의 자문에 대한 응답 등 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협정체결자 또는 경관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하 이 조에서 "발주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3. 13.>

1. 「도로법」에 따른 도로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시설
3.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
4.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에서 구성한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심의 결과를 15일 이내에 해당 경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

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별도의 경관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행정시 및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이 경관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는 시·도지사등에만 해당한다.

1.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3. 경관에 관한 조례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경관법 시행령

제8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7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사업의 목표
2. 사업주체
3. 사업 내용 및 추진방법
4.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5. 유지관리 방안
6. 사업비용
7.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서 경관사업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경관사업의 효과 및 필요성
2.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경관계획
3. 주변지역의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주변지역 경관과의 조화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9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경관사업추진협의체"라 한다)는 경관사업 대상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경관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관사업에 관한 의견수렴 및 개선사항의 건의

2. 경관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3. 경관사업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1. 법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사업, 철도시설사업 및 도시철도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5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인 사업

2.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

나. 지방자치단체가 300억원 미만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사업

3.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총사업비 규모 이상인 사업

제26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①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경관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2. 부위원장

3.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

④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도지사등은 경관위원회 회의를 마친 후 10일 이내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명단 및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서 규정한 공개 기준에 따라야 한다.

⑥ 경관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⑦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 대상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⑧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되며,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관위원회의 운영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기반시설"이란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해당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 및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나. 「철도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마.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 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다목적댐
- 사.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수도
- 아.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 자. 「하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차.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 카.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 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파.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원설비
- 하.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 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 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 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 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 머.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 버. 「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노외주차장
- 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공원
- 어.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 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
- 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
- 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펴.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 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 고.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 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지능형교통체계
- 도.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간정보체계
- 로.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13호에 따른 초고속정보통신망
- 모.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관
- 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 소.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
- 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중 교육·훈련, 병영생활 및 주거에 필요한 시설과 군부대에 부속된 시설로서 군인의 복지·체육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초.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 코. 「노인복지법」 제32조·제34조 및 제38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포.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대상이 되는 시설
- 호.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 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 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
- 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
- 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
- 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 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집적기반시설
- 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
- 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화장시설
- 추.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택시공영차고지

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전·

관리·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붙임 2]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별지 제2호 서식]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5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비용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

3. 미첨부 사유

-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도시주택과장 주현관
연락처	(033) 330 - 2470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